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36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고동진 · 성일중 · 김상훈
안철수 · 김재섭 · 강승규
권성동 · 임종득 · 송석준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

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켰음.

이에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투표용지의 인쇄 및 송부) ①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각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쇄매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쇄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송부 등 제반의 관리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1조의2(투표용지의 인쇄 및 송부)</u></p> <p>① <u>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각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쇄매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u></p> <p>② <u>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쇄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송부 등 제반의 관리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관리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